

학칙개정안 신·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 (교육과정편성) ①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②각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교수회의 의결과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31조 (교육과정편성) ①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<u>교육과정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②각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교수회의 의결과 <u>교육과정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	부 칙 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

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·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8조(폐강) 수강신청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. 단, 학과(부)의 사정 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강할 수 있다.	제18조(폐강) 수강신청 <u>학생수가 5명 미만인 교과목</u>은 폐강할 수 있다. 단, 학과(부)의 사정 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4조(성적평가 등급) 성적평가는 A등급 이상이 50%를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및 실험·실습, 실기 교과목은 학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단, 사회적 재난 및 재해, 천재지변, 전염병이 창궐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성적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	제24조(성적평가 등급) 성적평가는 A등급 이상이 30%를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,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이거나 실험·실습, 실기 교과목은 학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단, 사회적 재난 및 재해, 천재지변, 전염병이 창궐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성적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A</th><th>B</th><th>C</th><th>D</th><th>F</th></tr><tr><td>교양</td><td>0~50%</td><td colspan="4">자율</td></tr><tr><td>전공</td><td>0~50%</td><td colspan="4">자율</td></tr></table>	구분	A	B	C	D	F	교양	0~50%	자율				전공	0~50%	자율		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A</th><th>B</th><th>C</th><th>D</th><th>F</th></tr><tr><td>교양,전공</td><td>0~30%</td><td colspan="4">자율</td></tr></table>	구분	A	B	C	D	F	교양,전공	0~30%	자율			
구분	A	B	C	D	F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양	0~5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공	0~5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A	B	C	D	F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양,전공	0~3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 칙 1.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·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“신설”	제23조의3(폐강) 수강신청 학생수가 <u>10명 미만인 교과목</u> 은 폐강할 수 있다. 단, 야간에 수업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강신청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만 폐강할 수 있으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강할 수 있다.
	부 칙 1.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